

#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

- 클린클래스 A-G 및 C-G 신설
- 기존 온라인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인하

3.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 2017 년 4 월 29 일

4.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p>①~③ &lt;생략&gt;</p> <p>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래스 A 수익증권: 가입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li> <li>2. 클래스 A-E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li> <li>3. 클래스 C 수익증권: 가입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li> <li>4. 클래스 C-E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li> <li>5. 클래스 C-F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개인, 50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li> <li>6. 클래스 C-I 수익증권: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가입자</li> <li>7. 클래스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li> <li>8.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li> <li>9.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li> </ol>	<p>①~③ &lt;현행과 동일&gt;</p> <p>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래스 A 수익증권: 가입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li> <li>2. 클래스 A-E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li> <li>3. 클래스 A-G 수익증권: <u>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u></li> <li>4. 클래스 C 수익증권: 가입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li> <li>5. 클래스 C-E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li> <li>6. 클래스 C-G 수익증권: <u>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보수 보다 낮은 판매 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u></li> <li>7. 클래스 C-F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개인, 50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li> </ol>

	<p>8. 클래스 C-I 수익증권: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가입자</p> <p>9. 클래스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p> <p>10.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11.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p>
--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래스 A 수익증권</li> <li>2. 클래스 A-E 수익증권</li> <li>3. 클래스 C 수익증권</li> <li>4. 클래스 C-E 수익증권</li> <li>5. 클래스 C-F 수익증권</li> <li>6. 클래스 C-I 수익증권</li> <li>7. 클래스 C-W 수익증권</li> <li>8.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익증권</li> <li>9.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익증권</li> </ol>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래스 A 수익증권</li> <li>2. 클래스 A-E 수익증권</li> <li>3. <u>클래스 A-G 수익증권</u></li> <li>4. 클래스 C 수익증권</li> <li>5. 클래스 C-E 수익증권</li> <li>6. <u>클래스 C-G 수익증권</u></li> <li>7. 클래스 C-F 수익증권</li> <li>8. 클래스 C-I 수익증권</li> <li>9. 클래스 C-W 수익증권</li> <li>10.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익증권</li> <li>11.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익증권</li> </ol>
---	---

제39조(보수)

<p>①~② &lt;생략&gt;</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래스 A 수익증권</li> </ol>	<p>①~② &lt;현행과 동일&gt;</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클래스 A 수익증권</li> </ol>
--	--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0.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3.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8.8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1.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3.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8.9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	--

제40조(판매수수료)

<p>①판매회사는 클래스 A, 클래스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p> <p>②&lt;생략&gt;</p> <p>③클래스 A-E 수익증권에 대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00 분의 0.5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p> <p><u>&lt;신설&gt;</u></p> <p>④판매회사는 클래스 A, 클래스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①판매회사는 클래스 A, 클래스 A-E, <u>클래스 A-G</u>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p> <p>②&lt;현행과 동일&gt;</p> <p>③클래스 A-E 수익증권에 대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u>100 분의 0.35 이내에서</u>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p> <p><u>④클래스 A-G 수익증권에 대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00 분의 0.49 이내에서</u>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p> <p>⑤판매회사는 클래스 A, 클래스 A-E, <u>클래스A-G</u>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	---